www.kotra.or.kr

한중FTA 실무활용 가이드

한중FTA 활용지원센터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한중FTA
활용지원센터

한중 FTA 활용 체크리스트

1단계	한중 FTA란?	Ⅰ. 한중 FTA 개요
2단계	자사가 수입·수출하는 품목의 현재 관세는 몇%이고, FTA 발효 이후에는 얼마나/언제 관세가 낮아질까?	Ⅱ. 상품양허
3단계	FTA 특혜관세를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할까?	Ⅲ. 원산지기준
4단계	해외 진출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은?	Ⅳ. 민관합동 기업애로 대응체계 및 지원사례
5단계	해외 인증이 궁금하세요?	Ⅴ. 해외인증 지원서비스
6단계	FTA 정보, 활용상담, 중국진출 마케팅 등 어느 기관에 문의해야 할까?	(현지) KOTRA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 (국내) 차이나 데스크, 관세청, 대한상공회의소 등

코코후후산업 오유진 | 한중 FTA활용지원센터 김태경

코코후후산업_오유진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밥솥을 생산하는 코코후후사의 오유진사원입니다.
한중 FTA가 발효된다고 하던데, 우리 기업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한중 FTA활용지원센터_김태경

네, 반갑습니다.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의 김태경사원입니다.
우선 FTA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 (현행관세가 단계적으로 '0'이 되거나 줄어듦) 등 무역의 자유화에 관한 협정입니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 기업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차적으로 중국으로 수출, 수입 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서비스무역, 전자상거래, 투자, 지적재산권 등 포괄적인 분야에 걸쳐 경제협력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코코후후산업_오유진

한중 FTA가 발효되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한중 FTA활용지원센터_김태경

아닙니다.
관세혜택의 경우 즉시 철폐가 되는 품목도 있지만,
5년~20년 간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되기도 합니다.
(가이드 7페이지 참조)

코코후후산업_오유진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품목이 얼마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품목 : 전기밥솥, HS Code 85166030)

한중 FTA활용지원센터_김태경

한중 FTA협정문을 확인해보니 중국으로 수출 시 기준세율은 15%인데, 1.5%p씩 10년간 줄어들어 0%로 관세가 철폐됩니다. (기준세율 : 15%, 양허유형 : 10)
품목별로 현행관세가 몇%이고, FTA 발효 이후에 몇 년에 걸쳐 관세가 줄어드는지는 협정문의 2장, 상품협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관심 품목의 특혜관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게 친절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이드 8페이지 참조)

코코후후산업_오유진

우리 회사의 생산공장이 국내 · 외에 분포되어 있는데,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한중 FTA활용지원센터_김태경

아닙니다. 특혜관세는 조건이 맞아야 하고, 입증을 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협정 당사국 (한국과 중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즉, 한국이 모기업이더라도 제3국가 (예, 독일)에서 생산한 상품은 제외됩니다.
다만, 독일이 모기업이더라도 한국에서 생산해 한국원산지기준을 충족한 상품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産' 이더라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특혜관세를 적용받습니다.

코코후후산업_오유진

FTA 활용이 처음이라 원산지증명서 작성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데,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한중 FTA활용지원센터_김태경

HS코드(품목분류) 확정부터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및 발급 등을 지원하기위해
국내에는 무역협회에 'China Desk'를 운영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에는 'KOTRA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코후후산업_오유진

해외바이어에게 한중 FTA 효과를 어필하고 싶은데, 중국어로 FTA를 설명하려니
막막합니다. ㅠㅠ

한중 FTA활용지원센터_김태경

네, 저희 한중 FTA활용지원센터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특혜관세가 얼마나 되고, 바이어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 저뿐만 아니라
KOTRA 중국지역 무역관에서 심층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가이드 28페이지 참조)

코코후후산업_오유진

중국으로 처음 진출하려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현지 마케팅 등이 막연합니다.

한중 FTA활용지원센터_김태경

저희 센터에서 FTA활용 비즈니스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특히 현지 경험이 풍부한 63명의
자문단이 활동하고 있어, 법률 · 통관 · 금융 등에 대한 심층 상담뿐 아니라 생활소비재,
부품소재 등 산업부문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기진출 및 진출 희망 기업의 멘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현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업애로(비관세장벽)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에도 저희 센터로 연락주시면 대사관 및
민간 채널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_^

코코후후산업_오유진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FTA는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KOTRA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중국 수출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게 많을 것 같은데, 또 연락드려도 되죠?? +____+

한중 FTA활용지원센터_김태경

네, 감사합니다.
한중 FTA에 대해 여러 가지 문의사항 생기시면 언제든
저희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_^

I. 한중 FTA 개요

FTA란?

우리나라–체약상대국 간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에 관한 협정 입니다.

한중 FTA 협정문 구성

상품 관련	서비스 · 투자	규범 · 협력	총칙
2. 상품 • 2–가 한국 관세양허표 • 2–가 중국 관세양허표	8. 서비스 • 8–가–1 한국양허표 • 8–가–2 중국양허표	15. 지재권	1. 최초규정 및 정의
3. 원산지(PSR 포함) • 품목별 원산지 규정	9. 금융*	14. 경쟁	21. 예외
4. 통관 및 무역원활화	10. 통신*	18. 투명성	20. 분쟁해결
7. 무역구제	11. 자연인의 이동	16. 환경과 무역	19. 제도규정
5. SPS(위생 · 검역)	12. 투자	13. 전자상거래*	22. 최종규정
6. TBT(무역기술장벽)		17. 경제협력	

* 중국이 최초로 FTA에서 별도 챕터 채택(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 한국이 기체결한 FTA와 비교 : 한 · 미 FTA(24개 챕터), 한 · EU FTA(15개 챕터)

한중 FTA 협정문 활용법

특혜관세가 얼마나 될까?	2. 상품협정
품목별 현재 관세는 몇%이고, FTA 발효 이후에는 얼마나/언제 관세가 낮아질까?	부속서 2–가 상품양허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3. 품목별 원산지규정
법률, 건설, 환경, 유통, 엔터테인먼트 등 서비스 분야는 어떻게 개방했을까?	8. 서비스

II-1. 상품양허

한중 FTA 전체 상품 양허수준

품목군		한국		중국	
		품목수	수입액	품목수	수입액
일반 품목 (NT)	즉시	6,108 (49.9%)	418.5억불 (51.8%)	1,649 (20.1%)	733.7억불 (44.0%)
	5년	1,433 (11.7%)	31억불 (3.8%)	1,679 (20.5%)	58.3억불 (3.5%)
	10년	2,149 (17.6%)	173.3억불 (21.5%)	2,518 (30.7%)	312.5억불 (18.7%)
	소계	9,690 (79.2%)	622.8억불 (77.1%)	5,846 (71.3%)	1,104.5억불 (66.2%)
민감 품목 (ST)	15년	1,106 (9.0%)	79.5억불 (9.8%)	1,108 (13.5%)	219.2억불 (13.1%)
	20년	476 (3.9%)	34.1억불 (4.2%)	474 (5.8%)	93.75억불 (5.6%)
	소계	1,582 (12.9%)	113.6억불 (14.0%)	1,582 (19.3%)	312.9억불 (18.7%)
자유화율(NT+ST)		11,272 (92.2%)	736.4억불 (91.2%)	7,428 (90.7%)	1,417.4억불 (85%)
초민감품목(HST)		960 (7.8%)	71.3억불 (8.8%)	766 (9.3%)	250.1억불 (15.0%)
합계		12,232 (100%)	807.7억불 (100%)	8,194 (100%)	1,667.5억불 (100%)

- 품목수는 HS 2012 기준
  – 한국 10단위 코드 수 12,232개 품목, 중국 8단위 코드수 8,194개 품목
- 수입액은'12년 對상대국 수입액 기준

☞ (예시) 한국에서 생산한 전체 상품중 49.9%는 FTA 발효시 즉시 관세가 철폐됨을 뜻합니다.

양허품목 분류	의미		적용 품목수 예시	
			한국측 품목수	합계
NT (Normal Track) 일반품목	최장 10년 내 철폐	즉시철폐(NT0)	6108 (무관세 1983, 유관세 4125)	9,690
		5년 철폐(NT5)	1,433	
		10년 철폐(NT10)	2,149	
ST (Sensitive Track) 민감품목	10년초과 20년이내철폐	15년 철폐(ST15)	1,106	1,582
		20년 철폐(ST20)	476	
자유화율(NT+ST)	전체 상품 중 관세철폐대상 품목 및 수입액		11,272	11,272
HST (Highly Sensitive Track) 초민감품목	관세 완전철폐 예외인정	부분감축	87	960
		현행관세 + TRQ	21	
		협정배제	16	
		양허제외	836	
합계				12,232

☞ (예시) 한국에서 생산한 전체 상품중 11,272개(92.2%)는 관세가 철폐됨을 뜻합니다.
☞ (예시) 한국에서 생산한 전체 상품중 960개는 초민감 품목으로 부분적으로 관세감축 또는 인하대상에서 제외됨을 뜻합니다.

II-2. 양허예시

Schedule of Tariff Commitments : China (중국 양허표)			
HS 2012 (품목번호)	Description (품목명)	Base Rate (기준세율)	Staging Category (양허유형)
xxxxxxxx	xxxx	10	10

※ (예시) 현행 관세 10%인 제품이 10년 선형철폐 품목(NT10)으로 양허되었다면 ?

1년차(발효일 즉시)에는 관세가 1%p(10%의 1/10)만큼 낮아진 9%, 2년차(차년도 1월 1일)에는 8%, 3년차 7% 순으로 매년 균등하게 낮아져 10년차(발효연도 후 9년차 1월 1일)에는 관세가 없어지게 됩니다.

기준세율	10%	
1년차(발효일)	9%	-1%p
2년차(1.1)	8%	-1%p
3년차(1.1)	7%	-1%p
4년차(1.1)	6%	-1%p
5년차(1.1)	5%	-1%p

기준세율	10%	
6년차(1.1)	4%	-1%p
7년차(1.1)	3%	-1%p
8년차(1.1)	2%	-1%p
9년차(1.1)	1%	-1%p
10년차(1.1)	0%	-1%p

II-3. 특혜관세 확인 방법

① HS코드 확인

-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
  - 중국 HS코드 8자리 확인
-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
  - 한국 HSK코드 10자리 확인

○ 관세청 홈페이지
- 세계 HS 정보시스템 접속 (www.customs.go.kr)

② 양허표확인

-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
  - 중국 관세 양허표 확인
-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
  - 한국 관세 양허표 확인

○ 한-중FTA 양허표 확인 : (http://www.fta.go.kr/cn/doc/1/)

③ 양허유형확인

- **일반품목** – 양허유형 : 0, 5, 10, 10A
  – 최장 10년 내 철폐
- **민감품목** – 양허유형 : 15, 15A, 20, 20A/B
  – 10년초과 20년 이내 철폐
- **초민감품목** – PR, TRQ, E
  – 관세 완전철폐 예외인정
- **협정배제** – Carved-Out
  – 한·중 FTA협정문의 모든 의무에서 배제

II-4. 예시 (전기밥솥)

① HS코드 확인 — www.customs.go.kr (관세청) – 세계 HS정보시스템

Map search 지도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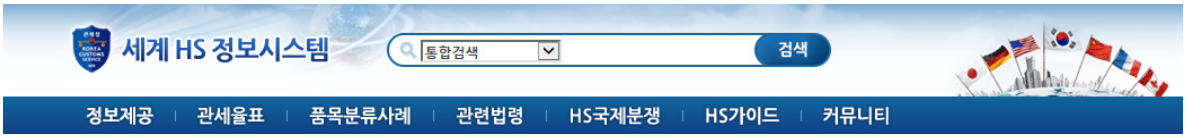

'Electric rice cookers'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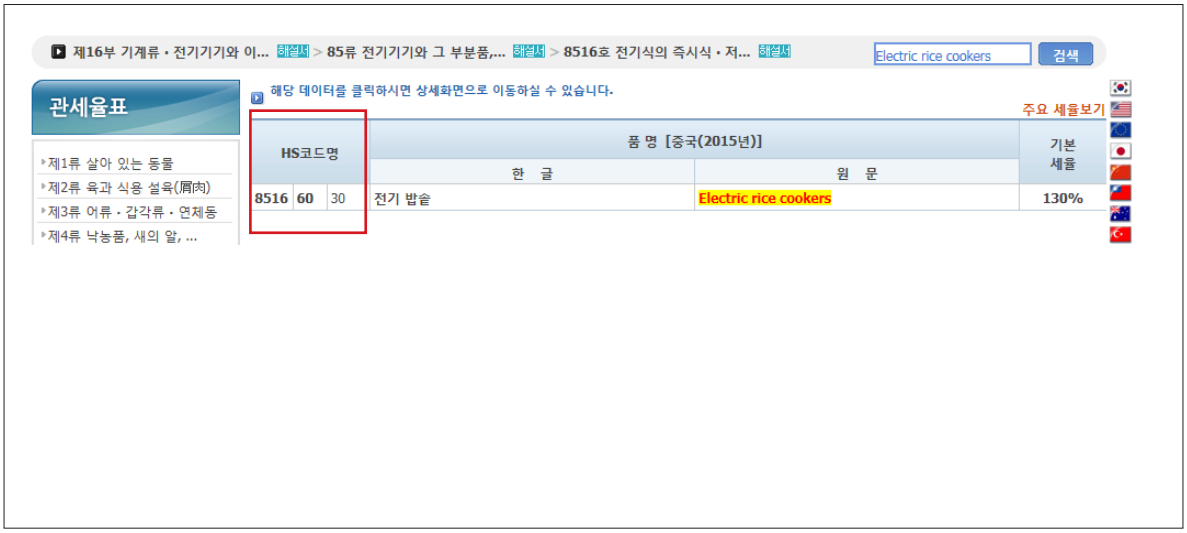

② 양허표 확인

www.fta.go.kr (FTA강국, KOREA) – 협정문정보

협정문 및 기본문서

※ 중국으로 수출 시 중국의 관세양허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 2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 한국 관세 양허표		
– 중국 관세 양허표		

③ 양허유형 확인

85166030 : Electric rice cookers

HS 2012	Description	Base Rate	Staging Category
85166010	Electromagnetic ovens	15	10
85166030	Electric rice cookers	15	10
85166040	Electric frying pans	15	10
85166050	Electric roasters	15	10
85166090	Other	15	10

전기밥솥 : 15% 10년 철폐

현재 세율이 15%이고, 매년 1.5%p씩 총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됨을 뜻합니다.

II-5. 양허유형

	양허유형	의 미	내 용	비 고
일반품목	0	NT0 (즉시철폐)	협정 발효일 즉시 관세철폐	무관세 : 이미 관세가 없음 유관세 : 발효시점 즉시 철폐
	5	NT5 (5년 철폐)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5년차 1월 1일 무관세)	
	10	NT10 (10년철폐)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10년차 1월 1일 무관세)	
	10-A	NT10 (10년 비선형철폐)	이행 9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10년차 1월 1일 무관세)	8년차 까지는 관세인하 없음, 이후 선형철폐 (한국) 액정디바이스(2개품목, 관세 8%) (중국) LCD패널(1개품목, 관세 5%)
민감품목	15	ST15 (15년철폐)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15년차1월 1일 무관세)	
	15-A	ST15 (15년 비선형철폐)	이행 11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15년차 1월 1일 무관세)	10년차 까지는 관세인하 없음, 이후 균등철폐 (한국) 없음 (중국) 광학기기부품(1개품목, 관세 8%)
	20	ST20 (20년철폐)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20년차1월 1일 무관세)	
	20-A	ST20 (20년 비선형철폐)	이행 11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20년차1월 1일 무관세)	10년차 까지는 관세인하 없음, 이후 선형철폐 (한국) – 잼(1개품목, 관세 30%) – 조제저장 기타과실견과 (1개 품목, 관세 45%) (중국) 없음
	20-B	ST20 (20년 비선형철폐)	이행 13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20년차 1월 1일 무관세)	12년차 까지는 관세인하 없음, 이후 선형철폐 (한국)기타한약재(1개품목, 관세8%) (중국) 없음
초민감품목	PR-1	HST 부분감축	협정 발효일 즉시 기준세율의 1퍼센트를 인하 (기준세율의 99% 유지)	예, 김치 (20% –> 19.8%)
	PR-8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8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92% 유지)	
	PR-1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1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90% 유지)	
	PR-15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15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85% 유지)	
	PR-2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2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80% 유지)	
	PR-3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3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70% 유지)	
	PR-35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35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65% 유지)	
	PR-50		협정 발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50% 유지)	
	PR-13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관세율 130%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종가세 130% 유지)	
	TRQ	HST 현행관세 + TRQ	일정물량에 한해 무관세로 수입하되,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준세율 유지	(한국) 21개 품목 낙지, 대두, 참깨, 아귀(냉동), 미꾸라지(활어) 등
	E	HST 양허제외	기준세율 유지	
	Carved – Out	HST 협정배제	한-중FTA협정의 모든 의무에서 배제	(한국) 쌀 (맵쌀, 찹쌀, 벼, 쌀가루 등) 관련 16개 품목

특혜관세 확인 방법 정리

전기밥솥(electric rice cookers) 한국 → 중국 수출시 특혜관세 확인 방법

① HS코드 확인

HS코드확인: 85166030

② 양허표확인

기준세율: 15, 양허유형: 10

③ 양허유형확인

NT10(10년 균등철폐)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기준세율	15%	
1년차(발효일)	13.50%	–1.5%p
2년차(1.1)	12.00%	–1.5%p
3년차(1.1)	10.50%	–1.5%p
4년차(1.1)	9.00%	–1.5%p
5년차(1.1)	7.50%	–1.5%p
6년차(1.1)	6.00%	–1.5%p
7년차(1.1)	4.50%	–1.5%p
8년차(1.1)	2.00%	–1.5%p
9년차(1.1)	1.50%	–1.5%p
10년차(1.1)	0%	–1.5%p

15%세율 10단계균등철폐

참고

HS코드 검색 시 유의사항

품목명만으로 검색이 어려운 경우, 관세청의 'UNIPASS' 혹은 '찾기쉬운 HS 가이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UNIPASS : 품목분류 및 관련 사례 제공
(http://portal.customs.go.kr/main.html)

찾기쉬운 HS가이드 : 산업 별 부품 및 관련 제품 HS코드 안내
(http://www.customs.go.kr/kcshome/wtm_index.po)

III. 원산지기준

왜 원산지 기준이 중요할까요?

○ FTA는 협정국에 대해서만 관세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 원산지 기준을 통해 협정관세 적용대상 물품인지 판단합니다.

○ 한중 FTA에서 특혜관세를 받으려면
①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② 협정국(한/중)에 소재하는 수출입자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③ 협정국(한/중) 간에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한중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 구비 등 협정에서 요구하는 제반 요건을 충족해야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FTA 활용은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참고

원산지기준의 개념

원산지판정 기준		의미		비고
1. 완전 생산 기준		협정국에서 획득, 생산된 재료만으로 생산		WO
2. 실질적 변형기준	2.1	세번변경기준	역외산 원재료–완제품 간 세번변경 기준	CC, CTH, CTSH
	2.2	부가가치기준	제조, 생산, 가공과정에서 역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기준 (한–중FTA: 공제법)	RVC
	2.3	가공공정기준	제조공정 중 핵심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했는지 여부 *한–중FTA 불인정	
	2.4	역외공정	한–중FTA, 개성공단 310개품목 인정	
3. 특례규정	3.1	누적기준	체약국의 원재료 이용 시 원산지인정	
	3.2	미소기준	1, 2 충족하지 못하지만 역외 원재료의 가치가 제품가격(혹은 중량)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는 경우	
	3.3	충분가공원칙	단순,경미한 공정을 거쳐 생산된 경우, 세번변경이 일어나더라도 원산지 불인정	예) 건조, 분쇄, 포장
	3.4	세트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구성품 중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전체 세트물품 FOB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기준관련 실무자 확인사항

※ 한/중에 소재하는 수출입자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우선적으로 확인!

(한국기업이 제3국에서 생산된 상품은 제외됨을 의미)

1. 원재료에 역외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 : 완전생산기준 (WO) 충족
2. 원재료에 역외산이 있는 경우 : 역외 원재료가 실질적으로 변경(실질적 변형기준)이 되었는지 판단 (원산지 판정)
   - 2.1 (세번변경기준)
   - 2.2 (부가가치기준)
3. 직접운송 원칙 충족 : 한국/중국에서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중국/한국으로 직접 수입/수출 되어야 함
4. 원산지 증명서 제출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
5. 통관 후 유의사항 (원산지 증명서 등 서류보관 의무, 원산지 검증 등)

원산지기준 확인

① HS코드 확인
HS 6단위 기준 검색
관세청 홈페이지 – 세계 HS 정보시스템 접속 (www.customs.go.kr)

② 원산지기준확인
CC/CTH/CTSH/RVC
한–중FTA 협정문 – 3장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접속 (http://www.fta.go.kr/cn/doc/1/)

Q (고객) **한국소재중소기업**이 **베트남 원사**를 수입하여 **재봉사를 만들어 중국으로 수출**하려는데, 이번 한중 FTA의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한국 소재 / 중국 수출

1. 역외산(베트남) 재료를 사용하기에 완전생산기준(WO) 불충족
2. 재봉사 생산 : 실질적 변경여부 확인 → 재봉사(최종재)의 원산지기준을 확인해야 함.
   - ① HS 코드 → HS5401. 10
   - ② 최종재와 역외산 원재료의 HS코드(세번) 비교
   - ○ 원산지기준 : CC (2단위 세번변경기준)

(최종재)	HS54	01	10
(원재료)	HS54	02	20
	(2단위)	(4단위)	(6단위)
	CC	CTH	CTSH

☞ 역외산 원재료 중에 세번 앞자리 2자리에 '54'가 있으면 원산지 불인정

원산지기준 예시

54.0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한다)	
	5402.11	아라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2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텍스처드사	
	5402.31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 텍스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1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401.10	합성필라멘트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1.20	재생 · 반(半)합성 필라멘트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54.0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필라멘트사 강력사 (5402.20)

2단위 세번변경기준

인조필라멘트 재봉사 (5401.10)

2단위 세번변경기준

참고

주요 품목별 원산지기준

- 신선농수산물(01~14류)은 민감성을 반영하여 완전생산기준으로 설정
- 가공농수산품(15~24류)은 수출가능성을 반영한 세번변경기준 중심
- 공산품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수준(세번변경기준 중심)으로 합의하였으나, 민감품목은 부가가치기준 설정
- 석유화학관련(27~38류)은 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중심으로 설정하고 일부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도입
  * 2710.12(경질석유와 조제품), 2710.19(등유, 경유, 중유 등 기타 조제품)
- 철강관련(72류) 도금, 선재 등 품목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냉연 제품은 예외기준을 포함한 4단위 세번변경기준 설정
- 기계(84류) 「전기전자(85류)」 정밀기기(90류)관련 세번변경기준(4단위, 6단위) 중심으로 설정, 산업 상 민감성이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기준
  * 액정 디바이스(LCD) 및 부분품 (9013.80, 9013.90)
- 섬유제품(50~60류)은 주로 「세번변경기준(예외기준 포함) 또는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40%)」으로 설정, 의류 제품(61~62류)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또는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40%)」
- 자동차 (87류)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 승용차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과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60%)을 모두 충족시 원산지 지위를 인정, 기타 완성차는 단일 부가가치기준(RVC 50%)
  * (기타) 자동차 부품 : RVC 50%, 새시·차체 : CTH 또는 RVC 40%

출처 : 한–중FTA협정문 상세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원산지증명서 양식

ANNEX 3-C
CERTIFICATE OF ORIGIN

ORIGINAL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country:			Certificate No.:			
2. Producer's name and address, country:			CERTIFICATE OF ORIGIN Form for Korea-China FTA			
3. Consignee's name and address, country:			Issued in _____ (see Overleaf Instruction)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Flight/Train/Vehicle No.: Port of loading: Port of discharge:			5. Remarks:			
6. Item number (Max 20)	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8.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9. HS code (Six-digit code)	10. Origin criterion	11. Gross weight, quantity (Quantity Unit) or other measures (liters, m3, etc.)	12. Number and date of invoice
13.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FTA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4. Certification: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China FTA.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zed body			

* 한-중FTA협정문
제3장 부속서 3-C(다)

9. HS Code
: 6자리 HSCode 기입

10. Origin criterion
(원산지기준)
: PSR 기입 (CC, CTH, CTSH, RVC 등)

※ 작성 주의사항

- 영어로 작성
(단, 뒷면은 영어, 중국어, 한글 가능)
- 반드시 컬러프린트로 인쇄할 것
- 원산지증명서는 한번만 출력되므로, 인쇄 가능상태를 우선 확인 할 것
- **다른 FTA협정에서 정하는 양식이나 자율발급 양식을 사용해서는 안됨**
- 전자적으로 서명, 날인이 된 증명서 인정

중요

특혜관세 신청 서류?

- 한중 FTA 특혜관세 신청을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해야 하고,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적시하는 서면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수입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원본 및 수입관련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의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 신청시 원산지 증빙서류를 소지 필수!
-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세관장이 요구시 즉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한중 FTA 협정문 가이드 요약

한중 FTA협정	○ 한중 간 관세 철폐 · 인하 등 무역자유화에 관한 협정 ○ 서문 및 22개 장 구성 (실질적 타결 : '14.11.10, 가서명 : '15.2.25, 정식서명 : '15.6.1) ○ 〈상품〉 협정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 협정에서 요구하는 제반요건 충족 시 협정세율 적용 * 협정세율확인 : 2장(상품), 적용대상품목인지 판단 : 3장(원산지) ○ 〈서비스〉 법률, 건축/엔지니어링, 환경, 유통, 엔터테인먼트 등 유망서비스 시장 개방
상품양허	○ 전체 상품(한국, HSK 10단위 12,232개/중국 HS 8단위 8,194개), 일반품목(NT), 민감품목(ST), 초민감품목(HST)으로 구분 ○ 품목별 기준세율 및 양허유형통해 관세혜택(스케줄) 확인
상품양허 스케쥴 확인 방법	1. HS코드 확인 (관세청 HS 정보시스템) 2. 양허표 확인 (한–중 FTA 협정문) * 對中수출 : 中HS코드, 中관세양허표, 對韓수입 : 韓HS코드, 韓관세양허표 3. 양허유형확인 (NT0, NT5, NT10, NT10A 등)
원산지기준	○ 한/중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혜택 부여 ☞ 원산지기준 통해 협정관세 적용 가능여부 판단 ○ 원산지기준/협정국 소재 수출입자 간 거래/직접운송원칙 ○ FTA활용은 입증이 가능해야만 관세혜택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작성주의사항)
원산지기준관련 실무자 확인사항	※ 한/중에 소재하는 수출입자간의 거래(전제조건) 1. 원재료에 역외산이 없는 경우 : 완전생산기준(WO) 2. 원재료에 역외산이 있는 경우 : 역외 원재료가 실질적 변경되었는지 판단 * 판단기준 :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한–중FTA : 가공공정기준 미적용) 3. 직접운송원칙 충족 : 한국/중국에서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수입/수출 4. 원산지 증명서 등 절차적 요건 충족 5. 통관 후 유의사항 : 문서보관 의무기간 3년, 원산지검증요청 시 자료 제공
서비스양허	○ 유망 서비스시장 개방 –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기회 확대 (법률, 문화, 유통 등) – 한류확산 및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 (엔터테인먼트, 관광 협력)
서비스 양허표 해석방법	○ Positive 방식 (양허표 언급된 분야만 개방, 추후 Negative 자유화방식전환 협상 예정) ○ 각 공급형태(MODE1~4)에 “none”(제한없음), “unbound”(약속안함)로 개방여부 기재

Ⅳ-1. 민관합동 기업애로 대응체계 및 지원사례

배경

기업애로 대응 필요성

- 행정 불투명성, 일관성 결여 등 다양한 기업애로 존재
- 각종 기업애로는 한중 FTA 활용 제약요인으로 작용
- 기업진출 애로사항 해소/완화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활동 필요성 제기

멋대로 인증·만만디 통관…손 놨다간 FTA 효과 '헛물'켜기 십상

"한국 인증은 중국에서 인정이 안 돼 중국인증을 받으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국내 인증을 중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국 안에서는 통관 절차가 너무 복잡해 기일 내에 수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날짜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중국 관세 당국으로부터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중소기업뉴스, 2015. 04. 15)

Ⅳ-2. 진출기업이 겪는 애로사항

기술규제 도입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규제)

- 타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불인정
-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 및 현장방문으로 기술유출 우려
- 기술규정의 자의적 해석 등

통관 : 세관의 자의적인 품목분류 (TV용 Tuner –〉 TV수신용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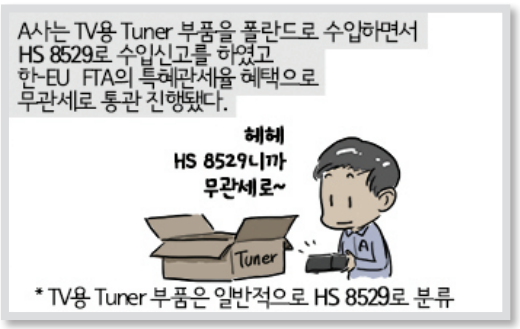

- 통관에 필요한 요구서류가 해관마다 상이
- 해관 별 상이한 라벨, 포장기준
- 사전고지 없는 추가서류 요구
- 신규 통관규정 및 제도 실시할 때 사전고지 미흡
- 까다로운 상품 및 위생검사, 특정 수입품목에 대한 통관항 임의지정 등

진입장벽 (조달사업)

Ⅳ-3. 기업애로 대응 체계

1 기업애로접수

- 대사관
- KOTRA, 무역협회
- 관세청, aT, 상의 등
- NTB-Portal.or.kr

2 검토 및 대응전략 수립

- Fact-finding
- 관계부처 (기관) 확인
- 법률, 산업영향평가 분석
- 대응방안 마련

3 대응과제 선정 및 다각적 해결 모색

- 대사관 및 KOTRA
- 정부채널 + 민간채널

3 신속대응반 구성 및 현지 대응

- 대사관 및 KORTA 주도
- 관세청, 국표원 등 관련 전문가 현지 파견

4 기업애로 해결

신속대응반통한 기업애로 해소 예시

Ⅳ-4. 한중 FTA에 따른 기업애로 개선

한중 FTA 협상내용

통관	○ 48시간 내 통관원칙 (협정문 제4.14조. 상품의 반출) – 특별히 규제되는 물품 외에는 보세창고 반입없이 반출 – 전자적 서류제출에 의한 사전 수입신고가 가능, 물품 도착 즉시 반출 가능 – 관련 법률에 변동사항 발생 시, 인터넷에 공고
일관성	○ 각 지역 세관에서 관세 법령을 일관성있게 집행 ○ 비일관적 집행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할 의무 명시
세관협력	○ 세관절차 발전을 위해 전문가 교류 실시 ○ 챕터의 이행 및 양국이 결정하는 사안대해 상호 지원
기 타	○ 통관절차의 원활화, 자동화 시스템활용, 저위험 품목 통관 원활화, 사후심사 원칙 등 명시

한중 FTA 발효 시
대중 수출입 기업들의 중국통관관련 애로사항이 다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

한중 FTA 발효 후, 양국 기업은 통관수속 이행 시 어떤 편리를 받게 되나요?

한중 FTA 협정문의 세관절차와 무역원활화 챕터에는 관련 규정의 공개, 통관 절차 간소화, 세관 협력강화, 리스크 통제 및 IT활용 강화 등을 통한 화물통관 가속화, 양국 기업을 위한 고효율의 통관서비스, 그리고 양국 화물 질서의 공동 유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협정에 따라 쌍방은 인터넷에 한중 양국의 무역과 관련된 법률, 법규 및 규정을 공개하고 상품의 세칙(稅則)분류,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해 사전 심의를 한다. 아울러 간소화된 세관절차를 활용하여 화물통관을 효율화하고 사전신고, 담보통관 등을 허용한다.

(중국 상무부 '중국–한국 자유무역협정 50문', 2015.06.01.)

Ⅳ-5. 한중기업 애로사항 해결지원

대사관과 KOTRA는 우리기업이 중국현지에서 겪는 다양한 기업애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지지원	○ 기업애로사항 조사 → 신속대응반 구성 및 검토 → 관계부처 협의 → 정부, 해외공관, KOTRA 무역관 등 다각적 대응 – 현지정부 및 관계기관 간담회, 현지진출 기업대상 설명회 개최 등
기업차원 대응방법 제시	○ 규제 자체의 해소가 어려울 경우, 우회 수출 또는 피해완화방법 제시 예) 中 살균유 수출 제재 시 우회수출방안(강화유) 對 업체 안내
대응사례 공유	○ 우수대응사례 전파 통해 유사 사례 해소 추진 예) 살균유 제재 대응사례, 분유수출 제재 케이스에 적용

현지에서의 신속대응 및 정보전파로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 밀착지원

무역관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베이징	(86-10) 6410-6162	pekktc@kotra.or.kr	www.kotra.or.kr/KBC/beijing
상하이	(86-21) 5108-8771	shanghai@kotra.or.kr	www.kotra.or.kr/KBC/shanghai
칭다오	(86-532) 8388-7931	qd_kotra@daum.net	www.kotra.or.kr/KBC/quingdao
청두	(86-28) 8672-3501	ctuktc@kotra.or.kr	www.kotra.or.kr/KBC/chengdu
광저우	(86-20) 2208-1600	canton@kotra.or.kr	www.kotra.or.kr/KBC/guangzhou
다롄	(86-411) 8253-0051/3	kotradlc@kotra.or.kr	www.kotra.or.kr/KBC/dalian
시안	(86-29) 8883-1060	xiakbc@kotra.or.kr	www.kotra.or.kr/KBC/xian

Ⅴ. 해외인증이 궁금하세요?

KOTRA 제공 인증정보 서비스

중소기업 50대 및 에너지 분야 15대 수출유망품목 인증정보

○ 글로벌윈도우(http://www.globalwindow.org) – 연구보고서 – 상품산업 카테고리에서 열람 가능
* 발간자료 열람 가능

글로벌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
접속 – [연구보고서] – [상품산업] 클릭

분류 – [제목] 선택 후 '인증'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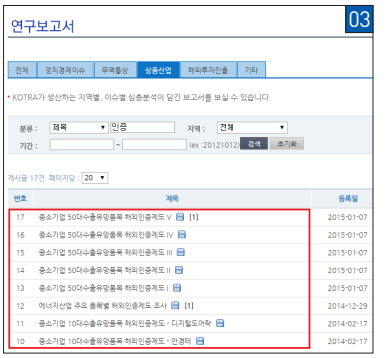

중소기업 50대 및 에너지 분야 15대
수출유망품목 해외인증제도 보고서
열람 가능

품목별 해외인증제도 및 해외인증컨설팅사 정보 제공

○ **해외인증제도**

글로벌윈도우(http://www.globalwindow.org) 접속
[상품 · 인증] – [해외인증제도]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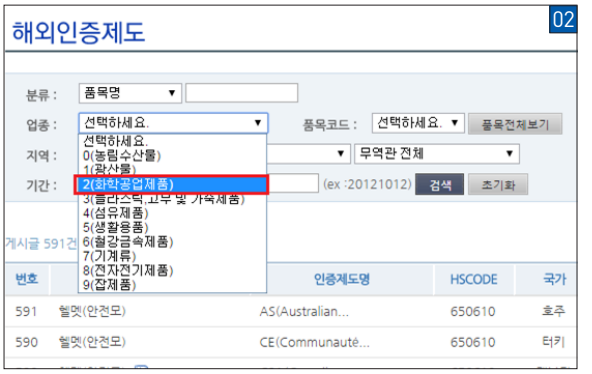

품목명 검색 혹은
[업종] 탭에서 해당 업종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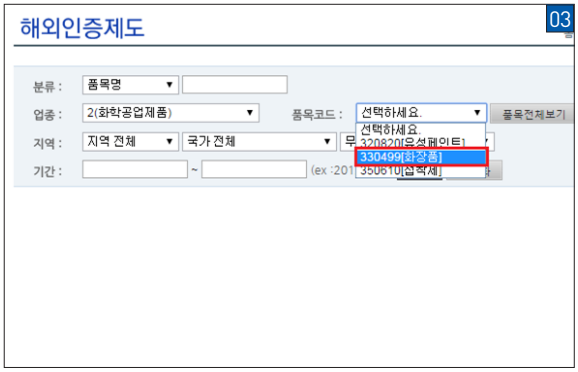

[품목코드] 탭에서 해당 품목코드 선택

해당 품목, 국가별 해외인증컨설팅사 정보 열람 가능

ㅇ 해외인증컨설팅사

글로벌윈도우(http://www.globalwindow.org) 접속
[상품 · 인증] – [해외인증컨설팅사]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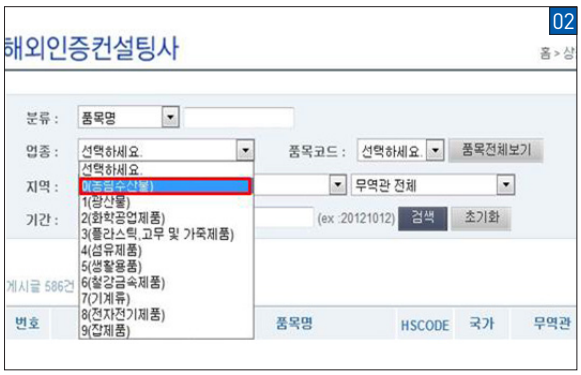

품목명 검색 혹은
[업종] 탭에서 해당 업종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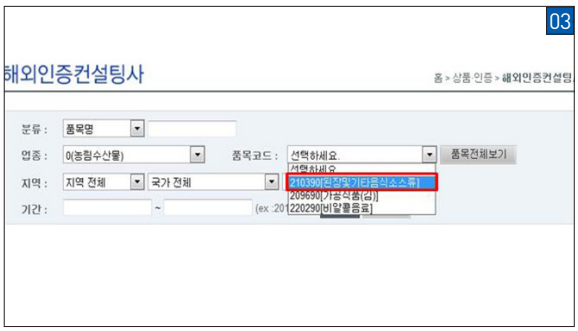

[품목코드] 탭에서 해당 품목코드 선택

해당 품목, 국가별 해외인증컨설팅사 정보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 1381 콜센터

1381이란?

- 인증 · 표준 분야의 모든 문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 전화번호
- 인증 · 표준 분야 전문 상담원이 제품별 · 국가별 맞춤형 정보 제공
- 해외 인증 관련 문의 중 필요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지원사업과 연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1:1 현장 밀착 상담 지원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상담분야 : 해외인증, 국내인증, 표준(권고/강제/국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인증정보시스템 (http://www.certinfo.or.kr)

해외인증정보시스템이란?

- 110여개국 350건의 인증 및 규제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나 HS코드를 입력하면 해당되는 인증을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
- 국가별 · 인증마크별 인증정보 확인 및 상담신청 가능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글로벌비즈니스센터 Tel) 02-860-1330, E-mail) jskim@ktl.re.kr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http://www.exportcenter.go.kr/eservice/foreign_auth/guide/guide.jsp)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이란?

-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 규격인증획득 중 시험 및 인증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 대상 및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전년도 수출액 5천만불 미만)
지원규모 및 예산 : 140억원, 약 1,600업체 지원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	5차 사업
신청 · 접수	2.9~2.28	4.1~4.30	6.1~6.30	8.1~8.31	10.1~10.31
평가 · 선정	3.1~3.20	5.1~5.20	7.1~7.20	9.1~9.20	11.1~11.20
협약체결	3.21~3.31	5.21~5.31	7.21~7.31	9.21~9.90	11.21~11.30

- 신청기간 : 2015년 2월 9일(월) ~ 2015년 10월 31일(토)
- 신청방법 :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또는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

문의처

담당기관			전화
관리기관	일반규격인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지원센터)	02-860-1312~3
	고부가가치인증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	02-507-8123~6
사업총괄	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		042-481-4355

VI. KOTRA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

한중 FTA, 어디까지 활용하고 계십니까?

FTA가 체결은 된다는데, 복잡한 내용 때문에 활용하기 어려우시다고요?
KOTRA와 함께라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협정문 내용부터 마케팅 상담까지 한중 FTA의 모든 것을 도와드립니다!

중국 4개 지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청두)에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주요기능

정보제공 — FTA 홍보활동

국내 및 중국 현지 설명회 개최

중국 베이징 및 국내 9개 도시 개최
('15.3~4월)

현지 이동 현장상담 운영

FTA 활용정보 제공

- 협정문 실무활용 가이드
- 중국 농식품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 비즈니스 활용 모델 등

활용 상담 — FTA 상담 서비스

국내기업 및 바이어 · 투자가 상담

단순상담

- 품목별 특혜관세, 원산지기준
- 법률 등 서비스분야 개방내용

심층상담

- 법률, 물류, 회계, 투자 등 기능별 심층상담
- 부품소재, 생활소비재 등 산업별 심층상담

통관 등 현지 기업애로 해소

마케팅지원 — FTA 활용 시장진출 마케팅

분야별 맞춤형 마케팅

- 구매상담회 등 투자기업 현지 마케팅
- 상표 · 디자인 출원, 세관 지재권 등록 지원
- 수출인큐베이터, 공동물류센터 운영

대형 전시회 · 무역사절단 운영

- 한류상품박람회 ('15. 8 중국 상하이)
- 중국-아세안박람회 ('15. 9 중국 난닝)
- 한국상품전 ('15. 11 중국 톈진)

63명의 현지 민간 자문단 활동

중국 진출 및 진출희망 기업의 '멘토' 역할

이용방법

China Desk | KOTRA 직원 파견, 전화 : FTA 콜센터 1380, 이메일 : 187205@kotra.or.kr

KOTRA 본사 | 콜센터 : 1600-7119 → 무역관련 문의는 2번, 투자관련 문의는 3번

한중 FTA 활용지원 센터

지 역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베이징	(86-10) 6410-6162	pekktc@kotra.or.kr	www.kotra.or.kr/KBC/beijing
상하이	(86-21) 5108-8771	shanghai@kotra.or.kr	www.kotra.or.kr/KBC/shanghai
칭다오	(86-532) 8388-7931	qd_kotra@daum.net	www.kotra.or.kr/KBC/quingdao
청두	(86-28) 8672-3501	ctuktc@kotra.or.kr	www.kotra.or.kr/KBC/cheng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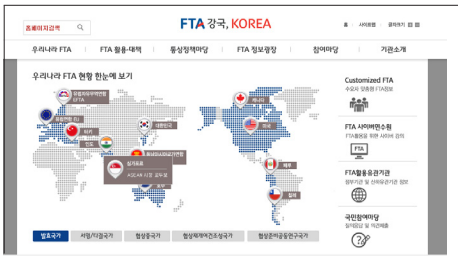

1. 한중 FTA 협정문 (특혜관세, 원산지기준 확인)

- 포털명 : FTA 강국, KOREA
- 포털 주소 : http://www.fta.go.kr
- 연락처 : FTA콜센터 1380
- 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우리나라 FTA현황 한눈에 보기
- FTA활용, 국내 지원대책
- 관세율 정보, 원산지정보
- FTA 정보광장 (최신뉴스, 참고자료, FTA쉽게알기)

※ 회신의 효력
-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 세관장은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하며, 품목분류사전심사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2.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이용하기

- 포털명 : UNI-PASS
- 포털 주소 : www.customs.go.kr
  1. 관세청 홈페이지 - 세계 HS 정보시스템 접속
  2. 화면 이동 후 '품목분류사전심사' 클릭
  3. 화면 이동 후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클릭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운영기관 : 관세청

* 품목별 분류 사전심사제도란, 물품을 수출입하고자하는자 등이 수출입신고를 하기전에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3. 원산지증명발급 및 검증지원

- 포털명 : 관세청 종합 솔루션 Yes FTA
- 포털 주소 : http://www.customs.go.kr/portalIndex.html
- 연락처 : FTA고객지원센터 (국번없이) 125
- 운영기관 : 관세청

-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 원산지검증 (서류보관가이드, 검증사례, 원산지검증지원센터 FTA 사후검증 상담전담팀 (1577-8577))
- 협정별 자료, FTA통계, 세율정보
- 「한중 FTA 100문100답」,「FTA활용기업의 필수지침서 BUSINESS MODEL 40선」

4. FTA무역종합지원센터

- 포털명 : FTA무역종합지원센터
- 포털 주소 : http://okfta.kita.net
- 연락처 : FTA콜센터 1380
- 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 FTA1380상담 (업종별 · 협정별 · 애로별 상담)
- 수출자, 로컬수출자, 수입자별 FTA Flow 절차 안내
- FTA 활용 (FTA 효과분석, 품목분류, 원산지기준확인,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서발급, 원산지관리시스템, 서류 및 증빙 관리, 사후검증대응)
- FTA협정정보 (한국, 주요국, 전세계의 FTA체결현황)
- 관세율/원산지 (수출, 수입세율 조회, 원산지기준, 판정 시뮬레이션, HSK품목분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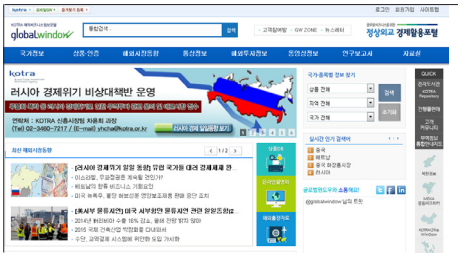

5. 국가정보 및 통상정보, 해외시장동향

- 포털명 : 글로벌윈도우 (KOTRA)
- 포털 주소 : http://www.globalwindow.org
- 연락처 : 1600-7119
- 운영기관 : KOTRA

- 151개국 국가정보
- 산업(상품) · 기술 트랜드 (해외인증제도, 국별유망산업보고서)
- 해외시장동향 (현장정보, 칼럼 · 기고, 포토뉴스, GW뉴스레터)
- 통상정보 (국가별 FTA · 통상정책, 통관 · 수입규제, TBT, 기타무역장벽 관련 통상속보)
- 해외진출정보 (해외진출속보, 해외지재원보호정보, 투자실무자가이드, 주간투자뉴스)
- 연구보고서 (정치경제, 무역통상, 상품산업, 해외투자진출)
- 자료실 (권역별·국별 진출전략, 해외출장자료, 글로벌이슈페이퍼, 경제·통상 현안자료 등)

6. FTA 활용교육 소개

- 포털명 : FTA 강국, KOREA
- 포털 주소 : http://www.fta.go.kr
  1. 정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 접속 후, 'FTA 사이버연수원' 클릭
- 연락처 : FTA콜센터 1380
- 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KOTRA글로벌연수원 FTA활용 전문인력양성과정
  - FTA 업종별 재직자과정 , FTA컨설턴트양성과정
  - 문의처 : 02-3497-1192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